법원, 추밀원과 법조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해협식민지 대법원

이관에 이어 법원이 재편되었습니다. 1867년 사법직무법(Judicial Duties Act)은 대법원장(Chief Justice)직을 신설했습니다. 1868년 대법원조례(Supreme Court Ordinance)는 페낭·싱가포르·믈라카 사법재판소(Court of Judicature of Penang, Singapore and Malacca)를 폐지하고 해협식민지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raits Settlements)으로 대체했습니다.[1] 새 법원은 전문 법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칙허장 체제에서 마찰을 일으켰던 총독과 주재 참사관(Resident Councillor)의 재판 참여가 끝났습니다. 1873년 법원조례(Courts Ordinance)는 대법원에 항소법원으로서 재판할 관할권을 부여했습니다.[2]

법원은 식민지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1885년의 개정 조례는 법관 수를 대법원장 1명과 일반 판사(puisne judge) 3명, 모두 4명으로 늘렸습니다. 1889년의 조례는 항소 사건을 3명 이상의 법관이 심리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3] 1890년 특별 배심과 일반 배심이 통합된 뒤, 같은 해 12월 일반 배심 앞에서 첫 살인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4] 이 시기의 대법원장으로는 1886년 3월 임명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시어도어 토머스 포드 경(Sir Theodore Thomas Ford)과, 홍콩 법무장관을 지내고 1890년 2월 취임한 에드워드 러플린 오말리(Edward Loughlin O'Malley)가 있었습니다.[5]

최종심으로서의 추밀원

대법원 위에는 식민지 법원의 상소를 심리하는 런던의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가 있었습니다. 추밀원은 식민지 법체계를 제국 최고 사법 권위와 연결했고, 여러 식민지에 걸쳐 보통법 해석의 일정한 통일성을 보장했습니다. 제A편에서 다룬 1875년 *Yeap Cheah Neo v Ong Cheng Neo* 판결은 현지 관습의 한계를 정하는 추밀원의 역할을 잘 보여 줍니다.[6]

상인과 투자자에게 추밀원은 하나의 보증이었습니다. 현지 법원의 공정성이나 역량을 의심하는 소송 당사자는 소송가액이 충분한 사건이라면 런던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비용과 지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적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었습니다. 추밀원 상소는 독립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94년에야 폐지되었고, 이때 싱가포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최종심 법원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A편에서 기록했습니다.

법조계

식민지의 법조계는 상업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인가를 받고 일원화된 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advocates and solicitors)들은 법정과 거래에서 상인들을 대리했습니다. 1886년의 조례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과 회수를 규율했습니다.[7] 식민지 시기에 설립된 법률사무소들은 에이전시 하우스, 은행, 해운회사, 화교 상인들을 위해 일했으며, 그중 일부는 원래 이름으로 또는 현대 법률사무소의 일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9세기 후반부터 점점 더 많은 해협 화인이 영국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 자격을 취득하고 싱가포르로 돌아와 개업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훗날 싱가포르 화교의 역사가가 된 송옹시앙(Song Ong Siang)도 있었습니다.[8] 이 변호사들은 제A편 제V장에서 설명한 공동체 간 가교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화교 상인들이 식민지 법원과, 회사와 신탁을 포함한 영국법의 수단을 자신의 사업과 가족을 위해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

1.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1867년 사법직무법은 대법원장직을 신설했고, 1868년 대법원조례는 "abolished the Court of Judicature of Penang, Singapore and Malacca and replaced it with the Supreme Court of the Straits Settlements". ↩
2.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1873년 법원조례는 "conferred on the Supreme Court of the Straits Settlements the jurisdiction to sit as a Court of Appeal". ↩
3. "Chapter VIII: 1885–1890", *Malaya Law Review*, vol. 11, no. 1, 1969년 7월: 1885년 조례 제15호는 법관 수를 4명으로 늘렸고, 1889년 조례 제19호 s. 6은 항소를 "before not less than three Judges"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4. 1890년 조례 제11호에 의한 특별 배심원과 일반 배심원의 통합 및 1890년 12월 첫 일반 배심 살인 사건 재판에 관해서는 "Chapter VIII: 1885–1890", *Malaya Law Review*, vol. 11, no. 1, 1969년 7월 참조. ↩
5. 포드(1886년 3월)와 오말리(1890년 2월)의 임명에 관해서는 "Chapter VIII: 1885–1890", *Malaya Law Review*, vol. 11, no. 1, 1969년 7월 참조. ↩
6. *Yeap Cheah Neo v Ong Cheng Neo* (1875) LR 6 PC 381; 제A편 제I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Chapter VIII: 1885–1890”, *Malaya Law Review*, vol. 11, no. 1, 1969년 7월: 1886년 조례 제17호는 법률 실무가에게 “certain rights, privileges, and duties … in reference to the taxation and recovery of their costs”를 부여했습니다. ↩
8. 송옹시앙은 영국 법정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1890년대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업했으며, *One Hundred Years' History of the Chinese in Singapore*, London, John Murray, 1923의 저자입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